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2. 8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1. 13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11. 13.

다. 상정일자: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12.8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생활체육과장 강영대】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적정한 운영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강료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, 체육시설의 추가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수강료 관련 규정 명확화 및 기준 정비

가) 수강료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제6호)

나) 수강료 관련 규정 정비(안 제9조, 제11조)

2) 사용료 관련 규정 명확화 및 기준 정비

가) 전용사용료 납부 규정 정비(안 제10조제1항)

- 나) 유효기간 경과한 사용료 감면 규정 삭제(안 제11조제5항)
- 다) 사용료 항목 신설 및 정비(안 별표 2 ~ 별표 4)
- 3)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
 - 가) 사용료 반환 면책 기준 구체화(안 제9조, 제10조)
 - 나) 관리·운영주체 귀책 위약금제 신설(안 제9조, 제10조)
 - 다) 이용자 귀책시 위약금 상한선 10%로 변경(안 제10조)
- 4) 개인사용료 등 감면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추가(안 제11조제1항)
- 5) 스포츠클럽 전용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(안 제11조제1항제2호)
- 6) 이용자 사용 제한 및 퇴장 사유 추가(안 제12조제2항)
- 7)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 항목 신설 및 정비(안 별표1)
- 8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(안 제5조제1항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○ 본 조례 개정안은

2020년 11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사용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생활 속 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이용자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기타 신설되는 구립 체육시설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자 제출됨.

-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6호 및 안 제9조, 제11조에서 수강료 용어 정의 신설, 그 밖에 사용료뿐만 아니라 수강료에도 납부·반환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강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고, 사용료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안 제10조제1항에서 전용 사용료 납부규정 정비, 안 제11조제5항에서 유효기간 경과한 사용료

감면 규정 삭제, 안 별표2, 별표3, 별표4에 망원 나들목 체육관 및 테니스장 사용료 범위를 신설하고 있음.

- 또한, 시설 이용의 공정성,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9조, 제10조에 사용료 반환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·운영 주체의 귀책 위약금제를 신설하여 공공 서비스 제공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명문화함. 그리고 사용 취소 요청 시기에 따라 최대 50%까지 부과하던 위약금을 상위법인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규정된 10%로 변경하고 있음.
- 안 제11조제1항에는 감면 대상에 독립 유공자 등 기존에 명시하지 않은 5개 보훈 관련 법령대상자를 감면 규정에 명시하였고, 안 제11조 제1항제2호에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이는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9조에 따른 신설 조항임.
- 그 밖에, 망원 나들목 체육관 및 테니스장 준공에 따른 항목을 안 별표1에 신설하고 운영 중인 체육시설 현황에 대한 항목을 정비하는 것으로, 동 개정안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고 개정 내용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어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【참고자료】

《지방자치법》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3. 21.>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 4. 1.>

《생활체육진흥법》

제9조(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·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.

《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》

제21조의2(이용료의 반환)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.

〈별표 3의2, 이용료의 반환기준〉

구분	발생일	반환금액
1. 법 제22조 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	가.이용개시일 전	반환금액 = 이용료 - 위약금(이용료의 1/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
	나.이용개시일 이후	1)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$\text{반환금액} = [\text{이용료} - (\text{이용료} \times \frac{\text{이미 경과한 기간(일수)}}{\text{계약상 이용기간(일수)})] - \text{위약금}$ 2)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$\text{반환금액} = [\text{이용료} - (\text{이용료} \times \frac{\text{이미 이용한 횟수}}{\text{계약상 이용 횟수}})] - \text{위약금}$